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주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7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8.

발 의 자 : 윤주경·박대수·배준영

윤창현 · 김희국 · 최승재

조명희 · 김기현 · 윤두현

박형수 · 강기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,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(안 제6조 및 제15조).

법률 제 호

6.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.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
- 3.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
- 4.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 중 "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"을 "다음 각 호의 권한을"로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보호조치 요청
- 3.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
- 4.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의 확인
- 5.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
- 6.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
- 7.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 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 등	제6조(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 등
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
	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	1.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
	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	2.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
	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
	3.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
	관한 사항
	4.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
	강화에 관한 사항
	5.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
	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
	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
	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
	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
	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
	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

<신 설>

제15조(권한의 위임)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<u>신</u> 설> <신 설> 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제15조(권한의 위임) 국방부장관 제15조(권한의 위임) -----

----다음 각 호의 권한을----

- 1.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 립·시행
- 2.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 해의 보호조치 요청
- 3.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·발굴
- 4.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

 인정 및 신원의 확인
- 5.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
- 6.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
- 7.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